
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
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4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7. 28.

발 의 자 : 민형배 · 김성환 · 김남국  
장경태 · 이원욱 · 김원이  
우원식 · 박홍근 · 윤준병  
이용빈 · 정필모 · 이소영  
용혜인 · 강득구 · 안호영  
이해식 · 위성곤 · 김정호  
김한정 · 김영배 · 양이원영  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고, 환경비용 등을 고려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석탄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음. 특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국가들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는 상황임.

석탄발전은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주요 해외투자사들은 석탄 투자를 배제하고 있는 실정임. 그러나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은 여전히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약 2조 9천억원의 자금공급이 이루어진 상태임.

이에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

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,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투자를 금지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해외 석탄발전 사업은 제외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금 공급 금지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행	개      정      안
<p>제18조(업무)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&lt;단서 신설&gt;</p> <p>5. ~ 8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18조(업무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/p> <p>----- . <u>다만,</u> <u>해외석탄발전 사업은 제외한</u> <u>다.</u></p> <p>5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